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9
------	-----

제출년월일 : 2005. 12. 16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인력이나, 최근 들어 생활민원 폭주, 생업지장 등의 사유로 직책 수임을 기피함에 따라 일선행정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던 각종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이 '05.8.4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이장 직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제명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띠어쓰기에 맞게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함.
- 나.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 상해보험 가입
 -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 정보화 장비 보급

-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 및 간담회
-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다. 예산조치 : 별첨
- 다. 입법예고 : 2005.11.7~11.27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라.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 마. 기타 참고사항
 - 강원도 시·군별 조례개정 추진실태조사서 : 별첨
 -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례 조사서 : 별첨
 - 현행 법령에 정해진 이장의 임무(지위)조서 : 별첨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 가입
3.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4. 정보화 장비 보급
5.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6.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평창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p>	<p>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p>
<p>제6조(신 설)</p>	<p>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 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p> <p>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p> <p>2. 상해보험 가입</p> <p>3.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p> <p>4. 정보화 장비 보급</p> <p>5. 퇴임 이장에 대한 공로패 및 간담회</p> <p>6. 기타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 한 경비</p>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④ 생략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간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별첨】

2006년도 예산(비용) 추계서

분야별	소요예산	비 고
직무능력배양	63,44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연수경비 : 38,000천 원 - 2,000천 원×19명=38,000천 원 ○ 교육경비 : 3,000천원 - 16천 원×187명=3,000천 원 ○ 향토지 보급 : 22,440천원 - 10천 원×187명×12월=22,440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정원의 10% 범위내 • 이장 집합교육,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연수
근무여건개선	32,631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보험료 : 2,431천원 - 13천 원×187명=2,431천 원 ○ 업무용 PC보급 : 27,800천원 - 800천 원×34대=27,800천 원 ○ 이장연합회 홈페이지 유지비 : 2,400천원 - 200천 원×12월=2,400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정원의 18% 범위내
사기진작	613,36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장수당 : 613,360천 원 - 정액수당 200천 원×187명×12월=448,800천 원 - 상여금 200천 원×187명×2회=74,800천 원 - 회의수당 40천 원×187명×12월=89,760천 원 	
총계	709,431천원	

이장수당(613,360천 원)이 총소요액(709,431천 원)의 86%를 차지하며, 본 조례로 추가되는 경비(96,071천 원)는 전체의 14% 수준임.

【별첨】

강원도 시·군별 조례개정 추진실태 조사서

시·군	조례개정 추진여부	비고
	홍천군 ('05. 4. 8. 개정공포)	
	횡성군 ('05.10.14. 개정공포)	
개정완료(5)	화천군 ('05. 4.13. 개정공포)	
	고성군 ('05. 3.14. 개정공포)	
	인제군('05. 6. 10, 개정공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동해시	
미개정(12)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양양군	

【별첨】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례 조사서

시군별	추 진 사례	비 고
고성군	(1) 상해보험료 (2) 선진지견학 등 비교행정연수와 교육훈련 (3) 체육행사 경비	'05. 3. 14. 공포
화천군	(1) 상해보험료 (2) 해외연수 경비 (3)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05. 4. 13. 공포
인제군	(1) 상해보험료 (2) 해외연수 경비 (3) 기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05. 6. 10. 공포
홍천군	(1) 상해보험료 (2) 홍보용 신문 (3) 건강검진 경비 (4) 국내·외 현장연수 경비	'05. 4. 8. 공포
횡성군	(1) 상해보험료 (2) 홍보용 신문 (3) 국내·외 선진지견학 경비 (4)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05. 10. 14. 공포
남제주군	(1) 연수경비	'05. 5. 25. 공포
창녕군	(1) 교육여비 등 제경비 (2) 이장협의회 운영 경비 (3) 국내·외 선진지시찰 경비 (4) 공로패 수여	'05. 2. 18. 공포

【별첨】

현행 법령에 정해진 이장의 임무(지위) 조사서

이장의 임무	관 계 법
○ 행정리의 대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 토지과세기준조사 촉탁원	토지과세기준조사법시행규칙 제19조
○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실조사, 증발급 확인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제24조 제33조
○ 손실보상금의 산출을 위한 운행횟수 조사원 또는 위 조사원 지정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6
○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사실확인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리 민방위대의 대장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동원유예자 확인자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1조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
○ 인근 토지의 이용 및 점용 등의 사실 확인자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